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034,374,128	61,031,224
일반회계	1,752,550,218	52,576,507
특별회계	281,823,910	8,454,717
공기업특별회계	210,320,639	6,309,61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7,449,575	2,923,48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2,871,064	3,386,132
기타특별회계	71,503,271	2,145,098
교통사업 특별회계	23,501,533	705,04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149,191	64,476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148,784	94,464
대지보상 특별회계	816,319	24,490
기반시설 특별회계	199,744	5,992
수질개선 특별회계	41,687,700	1,250,631

-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변경조서"와 같다.
- 제 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180,165천원으로 한다.
-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4,5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